

| | |
|------|-------|
| 의안번호 | 제198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14.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발의자 |
| 이길원 의원 외 4인 |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제198호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4일
발의자 : 이길원, 김영진, 심완예,
이정순, 장순관

1. 제안이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의 조문과 관련 법의 표기를 현행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23. 11. 17. ~ 11. 23. [7일간]

3)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서식 중 “(제9조의3제1항 관련)”을 “(제9조의4제1항 관련)”으로, “(조서)”를 “(조사)”로 한다.

별표 제2호서식 중 “제41조제4항”을 “제49조”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을 “제46조”로, “말하고”를 “말하고,”로, “거짓말”을 “거짓”으로 한다.

별표 제3호서식 중 “(제9조의3제1항 관련)”을 “(제9조의4제1항 관련)”으로, “제41조제4항”을 “제49조”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을 “제46조”로, “거짓말”을 “거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증인에 대한 사전안내(예시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의3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u>조서</u>)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p> <p>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div> |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증인에 대한 사전안내(예시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의4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u>조사</u>)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p> <p>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div> |

| 현 행 | 개 정 안 |
|--|--|
| <p>[별표2]</p> <p>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제9조의4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선 서</p> <p>본인은 예산군의회 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u>거짓말</u>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p> <p>년 월 일</p> <p>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p> </div> | <p>[별표2]</p> <p>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p> <p>(제9조의4제1항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선 서</p> <p>본인은 예산군의회 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u>거짓말</u>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p> <p>년 월 일</p> <p>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p> </div> |

| 현 행 | 개 정 안 |
|---|---|
| <p>[별표3] 피감사공무원선서문(제9조의3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p> <p>본인은 예산군의회(○○위원회) 00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u>거짓말</u>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자 : (인)</p> </div> | <p>[별표3] 피감사공무원선서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의4제1항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선 서</p> <p>본인은 예산군의회(○○위원회) 00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u>거짓말</u>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자 : (인)</p> </div> |

【붙임 1】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붙임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발생요인이 없거나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이길원 의원

【붙임 3】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예 산 군



주신 예산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3A충남예산100)

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종미**

여성가족팀장 **정유경**

기록자 **박승보**

전결 2023. 11. 17.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46925

(2023. 11. 17.)

접수 의회사무과-6403

(2023. 11. 17.)

우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 www.yesan.go.kr

전화번호 041-339-7912 팩스번호 041-339-7909 / greentea83@korea.kr / 대국민 공개

인구가 힘이다! 예산을 살아요!